

의안번호	제 229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0월 일 (제 304 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1년 10월 07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
----------	-----

제출연월일 : 2011. 10. 0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꿔 도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정함
(안 제2조)
- 나.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의2신설)
 - 1)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설문조사, 총학생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소위원회 구성시 일반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바꿔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규) 발췌 : 붙임과 같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11. 7.22. ~ 2011. 8.11.

(2) 예고결과: 붙임과 같음

라. 합 의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사. 의회법무담당 사전 검토 : 완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통합 또는 병설학교"를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로 하며,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3항 중 "소속한"을 "소속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제3조제2항 중 "결원"을 "결원"으로 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를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로 하며, "결원"을 "결원"으로 하며,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의"를 "그 밖에 위원"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격제한 여부 및"을 "자격제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를 "경비 이외의 다른"으로 한다.

제7조제1호의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호의 "허위 사실"을 "거짓"으로 하며,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에서 규정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의 "제2항의"를 "과반수"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2인이상인 때에는"을 "2인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5항의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를 "업무를 총괄하며"로 하고, "없는 때에"를 "없을 경우에"로 하며, 제6항의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법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을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으로 하고, 제5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를 "법 제32조제1항제11호에 따라"로 하고,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 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0조 중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를 "해당 학교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임시회는"을 "회의는"으로 하고, 제3항의 "또는"을 "이나"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중 "및"을 ", "로 하고, "연 30일"을 "연간 30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알림으로써"를 "알려"로 하고, "교사등이"를 "교직원 등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를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같은조 제3항의 "내역"을 "내용"으로 하고,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신설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19조 중 "또는"을 "이나"로,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한다.

제22조 중 "규정하지"를 "정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 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 교의 <u>학교운영위원회</u>(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u>운영위원회</u>는 통합하여 운영한 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 합 또는 병설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p> <p>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 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 다.</p> <p>③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 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p>	<p>제1조(목적) ----- 「초·중 등교육법」 ----- ----- <u>같은 법 시행령</u> <u>제62조에 따라</u> ----- ----- ----- <u>학교운영위원회</u>----- ----- ----- ----- .</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 <u>학교운영위원회</u>(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 ----- . ----- ----- <u>병설 및 통합운영</u> <u>학교</u>-----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p> <p>② ----- <u>해당</u> ----- ----- ----- .</p> <p>③ ----- <u>해당</u> ----- ----- -----</p>

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생략)

②위원이 꺾원된 때에는 보꺾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꺾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

-----된-----
-----.

④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꺾원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 ---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
----- 꺾원-----
경우에는 -----.

③ 그 밖에 위원의 -----
----- 해당 -----

원회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위원의 자격) ①(생략)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생략)

제6조(위원의 의무등) ①·②(생략)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임등) (생략)

----- 규정 -----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격제한,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임 등) (현행과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 전학 · 졸업 ·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생략)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

같음)

1. -----

경우에는 -----
-----.

2. -----

거짓-----
-- 경우에는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에 따른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

-----.

③ 과반수 ----- 경우에는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4.(생략)
5. 기타 -----

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

----- 업무를 총괄하며, -----

없을 경우에 -----.

⑥ -----

남은기간-----.

제9조(심의사항) ① -----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

-----.
3. 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
1명 이상-----

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

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제 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

해당 학교장에게 -----
-----.

제11조(회의소집등) ①(생략)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② -----
회의는 -----

--.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전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이나

-----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서 삭제>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

④ -----, -----

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생략)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
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
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

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
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
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
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
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
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
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

연간 30일-----
-----.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알려 -----
----- 교직원 등이 -----
-----.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제

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
록에는 -----

-----.

<삭 제>

③ -----
----- 내용-----

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영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전 심의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③ -----

-----.

제18조(간사) -----

----- 1명-----

-----.

제19조(운영경비 등) -----

----- 이나 학교회계에 산편성지침 등-----.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

----- 정하지 -----
-----.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0639호, 2011.5.19, 일부개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8.31>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3.24, 2008.3.21>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12.29>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4호, 2011.9.30, 일부개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3.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0.2.28>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0.2.28>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3.18>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3.18]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8]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2.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

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개정 2011.3.18>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28]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8.2.29>